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18가합551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성철

피고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재훈, 한부환

변론 종결2021. 3. 17.

판결 선고2021.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공정증서에 관한 2018. 3. 20.자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정증서에 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통신공과금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라 한다)는 소화물 전문운송업(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E가 발행한 보통주 100%(12,100,000주)를 소유한 모회사였다.
- (2) E의 대표이사였던 G는 H 등과 함께 2017. 8.경 E의 협력사인 대리점주들 150여 명과 대리점주 연합회를 결성하고, 2017. 9. 8. 소화물 전문운송업(택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다.
- (3) 원고는 2017. 10. 30.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E의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E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E에게 50억 원을 지급하였다.
- (4) E는 2018. 4. 6.까지 5회에 걸쳐 원고에게 243,930,988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756,069,012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E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사이의 택배사업계약상 지위 이전 약정

- (1) G, H 등은 2017. 11. 16. 소화물 전문 운송업(택배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였다.
- (2) E는 2017. 11. 30. D와 사이에 택배사업계약상 지위이전 약정(이하 '이 사건 지위이전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제3조 [대가의 지급, 채무의 인수]

- ② D가 E로부터 인수한 채무는 평가가액 범위 내에서 E가 부담하고 있는 주요 채권자들에 대한 다음 <표> 기재 채무 중 E가 서면으로 지정하여 D에게 통보하는 채무로 한다.
- ③ D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며, E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채권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을 경우 즉시 그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E는 해당 채무로부터 면책시키기로 한다.

<표>

1	피고	E	1,98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J 주식회사	E	440,000,000원	부가세 포함
3	K 주식회사	E	4,236,243,702원	연 2분의 이자채권 포함
4	원고	E	5,000,000,000원	부가세 포함
5	주식회사 L	E	165,000,000원	
합계	11,831,243,702원			

다.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체결

D는 2018. 3. 20. 피고와 사이에, 2018. 2.부터 2018. 5.까지 발생할 피고의 D에 대한 운송료 채권이 2,575,949,177원임을 승인하고, 2018. 4. 25.까지 775,949,177원을, 2018. 5. 25.까지 800,000,000원을, 2018. 6. 25.까지 500,000,000원을, 2018. 7. 25.까지 500,000,000원을 각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채무금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소송수계인의 흡수합병

피고 소송수계인은 2019. 3. 4. 피고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피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마.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 결과

원고는 D를 상대로, 'D는 E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E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할 수 없고, 가사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D가 이 사건 지위이전 약정에 따라 E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중첩적 내지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후 D가 2019. 6. 5.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D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해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5272호). 위 법원은 2020. 11. 24. 'E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D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지위이전 약정을 원고에게 D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D는 2018. 3. 20.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는바, 그로 인하여 D는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D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D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E에게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5272호로 이 사건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D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성철

판사이미경

판사홍사빈

별지